

2018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38조에 따라 2018년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2일

광 주 광 역 시 장

- 시행일 : 2018년 3월 1일
-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내용
 - 보육료 수납한도액

영유아 연령별		정부지원시설	정부미지원시설 (천원/월)		비 고
			민 간	가 정	
만 0 세		441	441	441	
만 1 세		388	388	388	
만 2 세		321	321	321	
만 3 세		220	282	298	
만 4 세		220	270	286	
만 5 세		220	270	286	
장애아동 (0~12세)	지정요건 준수	449	449	449	
	미준수 시설	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보육료 지원단가			

※ 정부미지원시설 : 기본보육료가 제외된 금액임

· 방과후·시간연장·야간·24시간·휴일·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

- 필요경비 수납한도액

항 목	내 역	수납주기	수납한도액(천원)
입학준비금	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 등	년	90 *재원생은 명찰, 수첩등 재입학에 따른 불가피한 신규 개인물품 구입비용만 수납
특별활동비	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, 교재교구 구입비 (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)	월	50(국공립) 55(국공립외)
현장학습비	현장학습비, 수련회비, 견학비	분기	45
차량운행비	통학차량 이용시 한정	월	20
행 사 비	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, 액자제작비 등	년	80
급 식 비	아침, 저녁 급식비	1식	1.3
사·도·특·성·화·용·비	지자체 여건 등 고려 사·도·지·사·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(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)	월	40